마이데이터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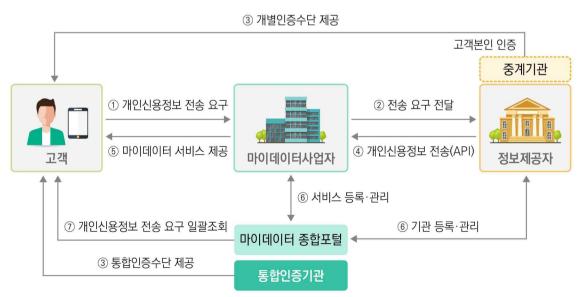
본 장은 마이데이터사업자가 API방식을 이용하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고객에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준비사항, 세부절차 등을 설명한다.

3.1. 마이데이터서비스 개요 및 참여자 역할

○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를 통해 정보제공자로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API방식으로('21년 8월 이후)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저장· 분석하여 고객에게 마이데이터서비스(통합조회 등)를 제공하게 된다.

가. 마이데이터서비스 주요절차

〈마이데이터서비스 구성 및 절차 〉



-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① 고객은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제공하는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여. ②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API규격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한다.
- (개인신용정보 전송) ③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제공자는 인증수단을 활용하여 고객 본인임을 확인하고. ④ API규격에 따라 마이데이터사업자에 개인신용 정보를 전송한다.
- (마이데이터서비스 제공) ⑤ 마이데이터사업자는 하나 이상의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집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토대로 통합조회 등 마이데이터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하다.
- (종합포털 등 지원업무) ⑥ 종합포털은 정보제공자와 마이데이터사업자간의 신뢰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⑦ 고객에게 전송요구 이력 일괄 조회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 ⑥~⑦의 종합포털 등의 지원업무는 ①~⑤의 마이데이터서비스 절차 순서와는 무관하다.

나. 마이데이터서비스 주요 참여자 및 역할

○ (참여자) 마이데이터서비스는 고객·정보제공자·중계기관·마이데이터사업자·마이 데이터 종합포털・인증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요건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마이데이터 참여자 요건 및 주요 역할 〉

| 참여자 | 요건 | 역할 |
|---------------|--|---|
| 고객 | 하나 이상의 정보제공자에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자 |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마이데이터서비스 이용 |
| 정보제공자 |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 • 개인신용정보 제공(전송) • 개별인증수단 발급·관리 • 고객 본인인증 |
| 중계기관 | 신용정보법령 상 중계기관 | • 개인신용정보 전송중계 • 고객 본인인증 |
| 마이데이터 사업자 |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 |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전달개인신용정보 수신마이데이터서비스 제공 등 |
|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 신용정보법 상 마이데이터 지원기관 | 서비스 등록·관리 자격증명 발급·관리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내용 일괄조회 기능지원 실환경 테스트 등 |
| 통합인증기관 | Cl활용이 가능한 인증수단 제공기관 (본인확인기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등) | • 통합인증 수단 발급·관리 |

- (고객) 고객은 하나 이상의 정보제공자에 본인의 개인사용정보를 보유한 자로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 하기를 희망하는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관련법령 M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4. 개인신용평가회사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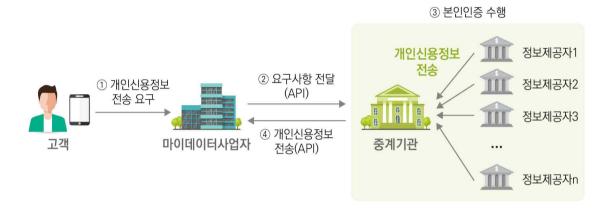
- **(정보제공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에 응하여, 전송요구 주체가 고객 본인임이 확인되면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해당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 하여야 한다

酮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⑧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 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할 수 있다.
- **(마이데이터사업자)** 고객이 정보제공자에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제공자로부터 전송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통합조회 등의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한다.
-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정보제공자와 마이데이터사업자를 등록·관리하고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내역 일괄조회 등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위한 지원기능을 제공하다.
- (인증기관) 통합인증을 위한 본인인증수단을 발급하고 발급된 인증수단을 관리 하다.
 - 정보제공자와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수단(통합인증)을 고객에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자가 개별적으로 마련한 별도의 인증수단(개별 인증)은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다.
- ※ 본인인증에 대한 상세 설명은 4장. 마이데이터 본인인증 참조

- (중계기관) 중소형 금융회사 등(세부 기준은 관련 법령 및 고시 참고)과 같은 일부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에 따라 마이데이터사업자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 중계기관을 이용한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절차 〉



(참고)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각 협동조합의 중앙회
- 중앙기록관리기관
- 행정안전부, 코스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 중계기관과 정보제공자 간 전송규격, 절차 등은 중계기관이 정한 별도의 규격과 절차를 따른다.

回回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등의 규모.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을 통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 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 신용정보법시행령 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 법 제22조의9제5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산 규모. 관리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수, 시장 점유율, 외부 전산시스템 이용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신용정보법감독규정 제2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③ 영 제18조의6제8항 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1. 영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은행. 같은 조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보험회사,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가. 직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경우
 - 나. 직전년도 말 기준 해당 업권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총 수에서 당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비율(이하 "시장점유율"이라 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시장점유율이 자기보다 높은 자의 시장점유율과 자기의 시장점유율을 합하여 100분의 90 이하인 경우 2) 해당 회사 단독으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 다.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6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용자" 수가 직전연도 말 기준 해당 업권 전체 전기통신이용자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 3.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신용조사회사는 제외한다.
 - 4. 법 제2조제9호의3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코스콤에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마이데이터서비스 주요 제공 기능 및 참여자 역할

○ 마이데이터서비스 주요 제공기능은 아래와 같으며 각 참여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마이데이터서비스 참여자 별 주요 역할 〉

| 역할 | 마이데이터사업자 | 정보제공자 |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
|------------------------|----------|-------|------------|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사항 전달 | 0 | | |
| 개인신용정보 전송 | 0 | 0 | |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관리 | 0 | | |
| 허가요건 준수 | 0 | | |
| 보안 고려사항 준수 | 0 | 0 | |
| 보안수준 진단(상시평가) | 0 | 0 | |
| 기능 적합성 심사 및 서비스 취약점 점검 | 0 | | |
| API 시스템 개발·관리 | 0 | 0 | 0 |
| 접근토큰·리프레시토큰 발급 관리 | | 0 | |
| 접근토큰·리프레시토큰 중복발급 확인 | 0 | | |
| 마이데이터서비스 제공 | 0 | | |
| 기관간 상호인증 | 0 | 0 | 0 |
| 고객 본인인증 | | 0 | |
| 요구 내역 일괄 조회 | | | 0 |
| 참여기관 등록·관리 | | | 0 |
| 자격증명 발급·관리 | | | 0 |
| 개인신용정보 송수신 내역 기록·보관 | 0 | 0 | |
| 개인신용정보 수신 내역 통지 | 0 | | |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사항 전달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종합포털

고객이 마이데이터사업자를 통해 정보제공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요구할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사항을 변경없이 API규격을 이용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전달 하여야 한다.

※ 관련 규격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 참조

개인신용정보 전송(API)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종합포털

고객이 마이데이터사업자를 통해 정보제공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요구할 경우, 정보제공자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주체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 한 후 API를 이용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여야 한다.

(마이데이터사업자도 정보제공자로서 개인신용정보 전송의 의무를 갖는다.)

※ 관련 규격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 참조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직접 전송하여야 한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관리 (조회·변경·철회)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종합포털

고객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내역을 관리(조회·변경·철회)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이나 철회 절차를 최초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법 제22조의9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3. (생략)
 - 4.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의 변경 및 철회의 방법을 최초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
 - 5.~11. (생략)

허가요건 준수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종합포털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서 정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요건 중 일부는 보안 고려사항의 내용을 포함
- ※ 상세 허가요건 및 절차는 「참고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 허가요건 및 절차」및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허가 매뉴얼」참고

관련법령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신용정보업 허가 등의 절차) ①다음각호에따른절차는별표1과같다.
 - 1.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 2.3. (생략)
 -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각각 정하는 서식 및 별표 1의2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영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1호 서식
 - 2. 영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 서식

보안 고려사항 준수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종합포털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 제19조①항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제20조③. ④항 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 및 본 가이드라인 내 「5장.마이데이터 보안」을 적용하며. 클라우드 이용. 망분리 등 신용정보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해당법령을 참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 시스템(제25조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③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 정보제공・이용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임원(신용정보의 관리·보호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생략)

보안수준 진단(상시평가)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종합포털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를 통하여 보안수준 진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 제45조의5(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제20조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통하여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

기능 적합성 심사 및 보안 취약점 점검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종합포털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에게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해당 서비스가 표준 API규격에 맞게 개발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능 적합성 심사와 보안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취약점 점검 대상, 시기 및 방법 등은 추후 가이드라인 개정시 반영 예정

API 시스템 개박·관리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종합포털

고객의 개인시용정보 및 전송요구 관련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API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데이터 전속을 위한 API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 전에 API가 표준에 맞게 개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포털과 연계된 API테스트베드를 이용하여 API가 표준에 맞게 적절히 개발 되었는지 확인)

접근토큰·리프레시토큰 발급·관리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종합포털

접근토큰 리프레시토큰을 규격에 맞게 발급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 접근토큰·리프레시토큰이 중복발급되지 않아야하며. 원활하게 갱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이를 위해 [참고5]정보제공자용 접근토큰 관리 자체점검표'를 참고하여 주기적으로(연1회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하며, 금융당국 및 지원기관은 자체점검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접근토큰·리프레시토큰 중복발급 확인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종합포털

접근토큰·리프레시토큰 수신시 기존 토큰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단 실시간 확인으로 인해 시스템 부하 등 서비스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최소 1일1회 이상 확인한다.

* 접근토큰 중복발급으로 인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정보제공자에 있으며,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토큰 중복 발급 확인 의무가 부여된다.

마이데이터서비스 제공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종합포털

API를 통해 전송받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고객에게 마이데이터서비스(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관간 상호인증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종합포털

TLS인증서를 이용하여 마이데이터사업자와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종합포털 간 안전한 개인신용정보.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상호인증을 수행한다.

※ 안전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위해 마이데이터사업자와 정보제공자 간 상호인증을 수행하고. 참여자 관리 등을 위해서 마이데이터종합포털과 금융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 간 상호인증을 수행한다.

고객 본인인증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종합포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에 응하기 전에 본인인증을 수행하여 반드시 고객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요구 내역 일괄 조회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종합포털

고객이 요구한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내역을 통합적으로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참여기관 등록·관리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종합포털

정보제공자와 마이데이터사업자(마이데이터서비스)를 종합포털에 등록하고 관리한다.

자격증명 발급·관리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종합포털

정보제공자와 마이데이터사업자 간 API 호출 자격을 인증하고 식별하기 위한 자격증명을 발급하고 관리하다.

개인신용정보 전송 내역 관리·보관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종합포털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정보제공자(또는 중계기관)와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는 마이데이터사업자 (또는 중계기관)는 개인신용정보 전송 내역을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개인신용정보 전송 내역에는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 특정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되 그 외 사항은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개인신용정보 전송 내역은 고객의 서비스이용 종료 시 폐기한다.

〈 개인신용정보 전송 내역 기록 예시〉

| 개인신용정보 전송 내역(ID:전송202104141300) | | | | |
|---------------------------------|--|--|--|--|
| 전송요구를 받는 자 | A은행 | | |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 | | |
|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 계좌1 (123-12-001234) 계좌2 (123-13-004321) | | | |
|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 시 그 주기 | 정기적 전송 요구 | | | |
|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 1년 | | | |
|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 통합자산관리 | | | |
|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 서비스 해지 시까지 | | | |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⑩ 법 제22조의9제 4항 및 제5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과 개인신용정보를 전 송받은 중계기관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전송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전송받은 신용정보내역에 관한 기록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개인신용정보 전송 내역 통지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종합포털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전송받은 개인신용정보 내역에 관한 기록을 고객에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개인신용정보 전송 내역에는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특정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되 그 외 사항은 자율적 으로 구성한다.

* 1년 이내 철회된 전송 요구에 대해서도 통지 필요(철회되었음을 명시)

〈 개인신용정보 전송 내역 기록 예시〉

| 개인신용정보 전송 내역(ID:전송202104141300) | | | |
|---------------------------------|--|--|--|
| 전송요구를 받는 자 | A은행 | |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 | |
|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 계좌1 (123-12-001234) 계좌2 (123-13-004321) | | |
|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 시 그 주기 | 정기적 전송 요구 | | |
|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 1년 | | |
|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 통합자산관리 | | |
|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 서비스 해지 시까지 | | |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⑩ 법 제22조의9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은 중계기관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전송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전송받은 신용정보내역에 관한 기록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3.2. 마이데이터서비스 등록 준비

- 정보제공자와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에게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에 기관정보 등을 등록한 후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 상세 등록절차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참고
 - **(정보제공자 등록)** 정보제공자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수행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에 기관정보 등을 등록하고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마이데이터서비스 등록)**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에게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포털에 기관정보, 마이데이터서비스 정보 등을 등록하고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3.3. 마이데이터 개인신용정보 전송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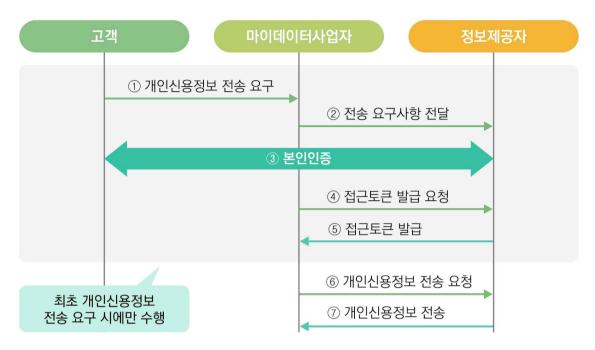
- (전송 요구) ①, ② 고객은 마이데이터사업자를 통해 정보제공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한다.
- (본인인증) ③ 정보제공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고객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고객 개인 신용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본인인증수단으로서 통합인증 방 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 개별인증 제공 여부는 선택
 - ※ 상세 본인인증 절차는 4장.본인인증 참조

- (접근토큰 발급) ④, ⑤ 정보제공자는 고객본인의 전송요구임이 확인(본인인증)되면 접근토큰을 발급하여 API요청을 허용한다.
- (개인신용정보 전송) ⑥. ⑦ 정보제공자는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유효한 접근토큰을 이용하여 API규격에 따라 전송요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다.
 - ※ 상세 전송 절차 및 관련 API는 별도배포되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API 규격」 참조
 - (전송규격) 정보제공자와 마이데이터사업자 간 개인신용정보 전송 시 반드시 표준 API방식을 사용한다.

참고

• 신용정보법령에 따라 중계기관을 이용할수 있는 정보제공자는 중계기관으로 하여금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계기관과 마이 데이터사업자 간 개인신용정보 요청 및 전송은 표준 API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중계기관과 정보제공자간 전송규격, 절차 등은 중계기관과 정보제공자 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개인신용정보 전송 절차 〉



- ①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고객은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제공하는 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정보제공자에 요구
- ② (전송 요구사항 전달)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사항을 정보제공자에 전달
- **③ (본인인증)** 정보제공자는 본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요구한 고객의 본인인증을 수행
- ❹ (접근토큰 발급 요청)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청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정보제공자에 접근토큰 발급을 요청
- **⑤ (접근토큰 발급)** 고객이 전송요구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권한을 포함하는 접근토큰을 생성하여 마이 데이터사업자에게 발급
 - ※ 최초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시만 ❶~⑤ 과정을 수행하며 이후 별도의 변경내역 없이 개인신용정보 전송 시는 기발급된 접근토큰을 이용하여 전송 수행
 - ※ **①∼⑤** 과정은 인증방식(개별 또는 통합)에 따라 일부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절차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API 규격」참조
- ③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청)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접근토큰을 이용하여 정보제공자에 고객이 전송 요구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청
- ⑦ (개인신용정보 전송) 정보제공자는 접근토큰 유효성을 확인하고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

3.4. 마이데이터 개인신용정보 전송 내역 관리

○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에게 개인신용정보 전송 내역 조회, 변경 및 철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이때 변경 및 철회를 최초 전송 요구보다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

가. 마이데이터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내역 조회

○ (전송요구 내역 조회) 고객은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기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내역에 대한 조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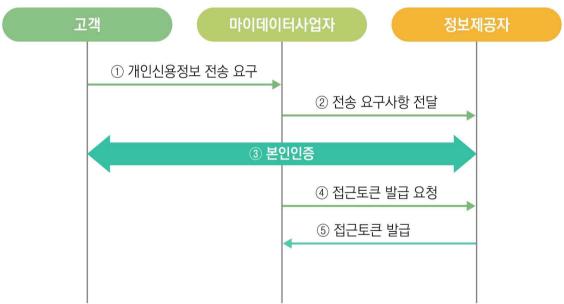
예시 고객에 제공하는 전송 요구 내역 항목

-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정보제공자 정보
- 전송요구한 개인신용정보 세부 항목
- 실제 전송된 개인신용정보 세부 항목 및 전송 기간
- 개인신용정보 수집 목적 및 용도
-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일시 및 만료 일시 등
- (전송요구 내역 일괄 조회) 고객은 종합포털이 제공하는 전송요구 내역 일괄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마이데이터사업자를 통해 요구한 전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 ※ 상세 절차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참조

나. 마이데이터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내역 변경

- (전송요구 내역 변경) 고객은 기존 전송요구 내역의 전송세부항목, 기간 등에 대해 변경 필요성이 생겨 고객이 새로운 전송요구를 통해 내역 변경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이에 응하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내역 변경 절차) 고객이 요구 내역 변경을 포함하는 전송요구를 생성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정보제공자에게 전송하면, 정보제공자는 고객 본인의 변경 요청임을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하여 전송요구 내역을 변경하고, 변경 내역을 반영한 새로운 접근토큰을 생성하여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발급한다.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내역 변경 〉



- (전송요구 내역 변경 요청) 고객은 마이데이터사업자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내역 변경을 요청
- ② (전송요구 내역 변경 요청 전달)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내역 변경 요청을 정보제공자에게 전달

- ③ (본인인증) 정보제공자는 본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변경 요청에 대한 고객 본인인증을 수행
- ④ (접근토큰 신규 발급 요구) 마이데이터사업자는 변경된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청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정보제공자에 접근토큰 발급을 요청
- **6 (접근토큰 발급)** 고객이 전송요구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권한을 포함하는 접근토큰을 생성하여 마이 데이터사업자에게 발급하고 기발급된 접근토큰 폐기
 - ※ 11~6) 과정은 인증방식(개별 또는 통합)에 따라 일부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절차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API 규격」참조

다. 마이데이터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내역 철회

- (전송요구 철회) 고객이 전송요구의 필요성이 없어져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이에 응하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철회 절차) 고객이 마이데이터사업자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철회를 요청할 경우, 정보제공자는 기발급된 접근토큰을 폐기함으로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철회하다.
 - (철회 주의사항 고지)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철회 시 주의사항에 대해 고객의 철회 수행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예시 | 철회시 고지 항목

-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목록 및 수집 기간
-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
- 철회 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불이익 등 안내

- (**삭제 여부 알림)**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에게 전송요구 철회 시 수집한 개인신용 정보가 삭제되는 것이 아님을 알리고. 철회와 동시에 수집된 정보를 삭제할 것인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개인신용정보 삭제)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고객이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삭제 메뉴를 제공하며, 이때, 고객은 정보 제공자 단위 이상으로 삭제할 개인신용정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삭제 대상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가 유효할 경우 고객에 안내 후, 해당 전송요구를 철회하다
- (회원탈퇴)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이 필요시 마이데이터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회원탈퇴 메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뱅킹앱 등과 같이 인앱(in-app) 형태로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에게 해당 마이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이용 해지 기능 등을 제공
 - (회원탈퇴시 전송요구 철회 및 삭제)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이 서비스탈퇴(회원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모든 전송요구를 철회하고 해당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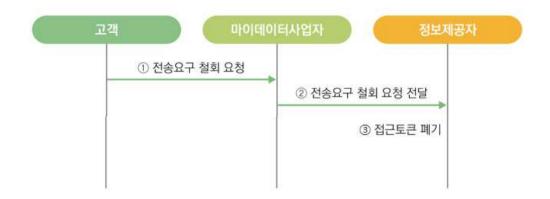
(참고) 서비스 탈퇴. 전송 철회 시 개인신용정보 삭제 관련

- (서비스 탈퇴) 고객이 더 이상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아 서비스 탈퇴(회원탈퇴)를 요청할 경우,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서비스 탈퇴와 동시에 모든 전송요구를 철회하고 해당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즉시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 (저송 철회) 전송 철회과정에서 고객 필요에 따라 개인시용정보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화면을 제공해야. 하며(아래 참조), 고객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삭제 범위는 전송 요구 이후 수집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로 한정한다.



- (그 외)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최초 요구 시 특정한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이 지났을 경우 또는 고객이 명시적으로 삭제를 요구할 경우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하여야 한다.
- ※ 상기 삭제 관련 내용은 기능 적합성 심사, 상시평가 등을 통해 확인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철회 〉



- (전송요구 철회 요청) 고객은 마이데이터사업자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철회를 요청
- ② (전송요구 철회 요청 전달)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철회 요청을 정보제공자 에게 전달
- **③ (접근토큰 폐기)** 정보제공자는 기발급된 접근토큰을 폐기

라. 마이데이터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기간 연장

- (전송요구 기간 연장 요청)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이 지정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기간 만료 시점 1개월 전부터 고객에게 개인식용정보 전송요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전송요구 기간 연장 절차)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절차와 동일하며, 정보제공자는 본인인증 수행 후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새로운 접근토큰을 발급하여 전송요구 기간을 연장한다.
 - * 통합인증을 이용하여 다수의 정보제공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전송 연장 요구 시. 최초 1개 의만료시점에 일괄적으로 연장요청가능
 - (전송요구 기간 연장 화면) 연장화면은 마이데이터사업자가 고객편의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그 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고객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제공자 ① 전송요구 기간 연장 요청 ② 전송 요구 기간 연장 요청 전달 ③ **본인인증** ④ 접근토큰 발급 요청 ⑤ 접근토큰 발급

〈 전송요구 기간 연장 〉

① (전송요구 기간 연장 요청) 고객은 전송요구 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에 대 해 마이데이터사업자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기간 연장을 요청

- ② (전송요구 기간 연장 요청 전달)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기간 연장 요청을 정보제공자에게 전달
- ③ (본인인증) 정보제공자는 본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고객 본인인증을 수행
- ④ (접근토큰 신규 발급 요구)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기간이 연장된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청 권한을 획득하 기 위해 정보제공자에 접근토큰 발급을 요청
- **⑤ (접근토큰 발급)** 고객이 전송요구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권한을 포함하는 접근토큰을 생성하여 마이 데이터사업자에게 발급하고 기발급된 접근토큰 폐기
 - ※ 12~6 과정은 인증방식(개별 또는 통합)에 따라 일부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절차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API 규격」참조
- (전송요구 기간 만료) 고객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기간 연장에 응하지 않아 개인신용 정보 전송요구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정보제공자는 기존의 접근토큰을 폐기한다. 이후 개인신용정보 전송이 중지되며 전송재개를 위해서는 3.3. 마이데이터 개인신용 정보 전송 절차를 수행하혀야 한다.

마. 마이데이터 개인신용정보 전송 내역 관리

- (전송 내역 기록)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정보제공자·중계기관과 개인신용 정보를 전송받은 마이데이터사업자·중계기관은 개인신용정보 송수신 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전송 내역 통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은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개인신용정보 송수신 내역에 대한 기록을 고객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 (전송 내역 통지 방법) 마이데이터사업자는 마이데이터서비스,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또는 SMS등을 통해 내역을 통지할 수 있다.

집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⑩ 법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은 중계기관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전송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전송받은 신용정보내역에 관한 기록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